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파리협약 및 브뤼셀보충배상협약 개정의정서 채택

Adoption of Protocols to amend the Paris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and the Brussels 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

김상원, 장군현, 오병주, 송재명, 정명모, 김효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약

체르노빌사고 이후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강화 경향에 따라 1997년의 비엔나협약개정에 이어 2004년 2월 12일 파리협약 개정의정서 및 브뤼셀보충배상협약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파리협약개정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최저손해배상책임 한도가 1500만 SDR에서 7억 유로로 증액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국내배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보하기 위하여 개정 보충배상협약에서는 기존의 3단계 보상체계(3 Tiers)를 유지하되 그 금액은 대폭 인상되었다(3단계 금액 합계 15억 유로). 파리협약 개정의정서는 서명국의 3분의2 비준으로, 개정 보충배상협약은 서명국 전체의 비준으로 발효되게 된다.